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서지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2805

발의연월일: 2024. 8. 13.

발 의 자:서지영・안상훈・조은희

조승환 · 최은석 · 이헌승

정성국 · 성일종 · 김대식

곽규택 · 김선교 의원

(119]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아동·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신상공개 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에 그 신상을 공개 하도록 하는 한편, 공개대상자가 신상정보 공개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교정시설 등에 수용된 기간은 공개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, 공개대상자가 수용기간 종료 후 다른 범죄로 교정시설 등에 재수용되거나 출국 등으로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기간 동안에는 신상 정보 공개기간이 그대로 경과함으로써 성범죄자의 사회 복귀 후 성범죄 재범을 억제할 수 있는 요인이 사라지게 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법원의 별도 선고가 있을 경우 신상정보 공개대상자가 다른 범죄로 교정시설이나 치료감호시설에 재수용된 기간 및 해외 출국으 로 1주일 이상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기간도 신상정보 공개기간에 산 입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(안 제49조제3항 및 제4항).

법률 제 호

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49조제3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4. 제4항에 따라 법원이 제1항에 따른 공개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않기로 할 것을 선고한 제4항 각 호의 기간
- ④ 법원은 제1항 본문에 따라 공개명령을 선고하는 때에는 공개대 상자의 성범죄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을 제1항에 따른 공개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않기로 할 것을 동시에 선 고할 수 있다.
- 1.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수용된 기간 이후에 공개대상자가 다른 범죄로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될 경우 그 수용 되는 기간
- 2.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수용된 기간 이후에 공개대상자가 해외로 출국하여 1주일 이상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할 경우 그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기간

제50조제4항제1호 본문 중 "제49조제4항"을 "제49조제5항"으로 하고,

같은 호 단서 중 "제49조제4항제3호"를 "제49조제5항제3호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9조(등록정보의 공개) ①・②	제49조(등록정보의 공개) ①・②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③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제1항	③
에 따른 공개기간에 넣어 계산	
하지 아니한다.	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<u> <신 설></u>	<u>4. 제4항에 따라 법원이 제1항</u>
	에 따른 공개기간에 넣어 계
	산하지 않기로 할 것을 선고
	한 제4항 각 호의 기간
<u> <신 설></u>	④ 법원은 제1항 본문에 따라
	<u>공개명령을 선고하는 때에는</u>
	공개대상자의 성범죄 재범의
	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
	호의 기간을 제1항에 따른 공
	개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않기
	로 할 것을 동시에 선고할 수
	<u>있다.</u>
	1.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
	수용된 기간 이후에 공개대상
	자가 다른 범죄로 교정시설
	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될
	경우 그 수용되는 기간

<u>④</u> ~ <u>⑦</u> (생 략)

- 제50조(등록정보의 고지) ① ~ 7 ③ (생 략)
 - ④ 제1항에 따라 고지하여야 하는 고지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고지대상자가 이미 거주하고 있거나 전입하는 경우에는 <u>제</u> 49조제4항의 공개정보. 다만, <u>제49조제4항제3호</u>에 따른 주소 및 실제거주지는 상세주소를 포함한다.
 - 2. (생략)
 - ⑤ (생략)

2.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
수용된 기간 이후에 공개대상
자가 해외로 출국하여 1주일
이상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할
경우 그 국내에 거주하지 아
<u>니하는 기간</u>
<u>⑤</u> ~ <u>⑧</u> (현행 제4항부터 제7
항까지와 같음)
제50조(등록정보의 고지) ① ~
③ (현행과 같음)
4
1
제49조제5항
<u>제49조제5항제3호</u>
<u>.</u>

2. (현행과 같음)

⑤ (현행과 같음)